



배포 일시	2023. 3. 15.(수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홍 철 (044-201-4990)
			사무관 김병철 (044-201-3521)
보도일시	3.15.(수) 10: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.		

원희룡 장관, “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시킬 것”

- 국토부 피해사례 일제조사(1.19 발표) 세부 분석결과 공개 -
- 부당 노조 전임비 수수 월 평균 140만원 ... 이 외에 월 20만원 복지금 관행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(‘22.12.30.~’23.1.13.)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‘노조 전임비’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.

- 소위 ‘노조 전임비’는 「노동조합법」상 ‘유급 근로시간 면제’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,
 -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·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.
 -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□ 한편,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나,

-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하였다.

<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(단위 : 명, 시간)>

조합원수	~99	100~199	200~299	300~499	500~999	1,000~2,999	3,000~4,999	5,000~9,999	10,000~14,999	15,000~
연간한도	2,000 ↓	3,000 ↓	4,000 ↓	5,000 ↓	6,000 ↓	10,000 ↓	14,000 ↓	22,000 ↓	28,000 ↓	36,000 ↓

○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 및 전임자의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,

- 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.

□ 업계에 따르면 소위 ‘노조 전임비’ 수수 구조는 다음과 같다.

○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‘현장교섭’ 을 진행하며,

-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‘노조 전임비’ 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이 현재는 관행처럼 정착되었다고 전하였다.

○ 이러한 전임자는 노조에서 지정하여 계좌번호 및 금액을 통보,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고,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이러한 전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, 4대 보험 등을 서류 상 현장에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한다고 전하였다.

○ 한편, 이러한 ‘노조 전임비’ 외에도 소위 복지기금이라고 하여 통상적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일정 비용(월 20만원)을 요구하고, 수수하는 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소위 ‘노조 전임비’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< 노조전임비 분석 개요 >

◆ 자료 : ‘피해사례 일제조사*’(22.12.30~23.1.13) 시 제출 자료

기준 : ‘전임비’ 명목 체크된 경우, 계좌 입금액·수취자 정보가 있는 경우

* 1,484곳 현장, 2,070건 접수 → 이 중, 전임비 수수 사례는 567건(27.4%) 접수

○ (총 수수액)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수수한 누적액은 164백만원(20개 현장)으로 나타났다.

< 전임비 수수 누적 총액 상위 10명 >

구분	대상자	누적총액 (백만원)	현장 개수	지급기간	월 평균액 (백만원)
1	A	164	20	18.11 ~ 22.11	3.35
2	B	86.9	1	20.2 ~ 21.1	7.24
3	C	86.3	3	20.2 ~ 21.1	7.19
4	D	85.8	1	20.2 ~ 21.1	7.15
5	E	81.0	1	20.2 ~ 21.1	6.75
6	F	80.9	1	20.2 ~ 21.1	6.74
7	G	75.3	1	20.1 ~ 21.1	5.79
8	H	74.9	1	20.3 ~ 21.2	6.24
9	I	73.9	1	20.3 ~ 20.12	7.39
10	△△△△노동조합	73.6	1	21.11~22.4	12.3

- (월 평균 수수액) 소위 ‘노조 전임자의’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, 최대 월 1,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.
 - (중복 수수자)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 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.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으며, A씨는 같은 기간에 최대 10개 현장**에서 전임비 등을 수수하기도 하였다.
- * 같은 기간에 돈을 받아간 현장 수 / ** 누적총액 최대 수수자와 동일인(1.6억원, 20개 현장)

< 동일 기간 10개 현장 중복 수수자 분석 결과 >

연번	현장명	기간	총지급액 (만원)	월지급액 (만원)	수수자	지급업체
	계	'21.10-'22.11	3,340	370	A	4개社
1	인천 ▽▽	'21.11-'22.10	1,320	110		□□건설
2	부산 ▽▽	'21.11-'22.10	1,200	100		▽▽건업
3	부산 ▽▽	'21.10-'22.11	260	20		◇◇건설
4	경남 ▽▽	'22.04-'22.10	140	20		□□건설
5	부산 ▽▽	'22.04-'22.10	140	20		▽▽건업
6	부산 ▽▽	'22.05-'22.10	120	20		▽▽건업
7	경남 ▽▽	'22.07-'22.11	100	20		△△
8	경남 ▽▽	'22.10	20	20		□□건설
9	부산 ▽▽	'22.10	20	20		□□건설
10	부산 ▽▽	'22.10	20	20	□□건설	

- * 10개 중 8개 현장은 복지기금(각 20만원), 2개 현장은 전임비(각 100, 110만원) 추정
- 이들이 여러 개의 현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은 월 260만원 수준이었으며, 월 81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.

- 여러 개의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.6개월로 나타났으며,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.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,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” 며,
 - “일 안하는 팀·반장 등 ‘가짜 근로자’ 에 이어 ‘가짜 노조 전임자’ 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” 고 강조하였다.
 - 아울러, 원 장관은 “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「노동조합법」에서 정한 ‘유급 근로시간 면제’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·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” 고 밝혔다.

